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46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박홍배 · 박 정 · 김태선
박정현 · 한준호 · 김태년
민병덕 · 김동아 · 김우영
이기현 · 서미화 · 김남근
최혁진 · 서영교 · 이수진
윤준병 의원(16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로 이루어진 동남권은 조선 · 자동차 · 기계 · 철강 · 석유화학 등 국가 제조업의 중심축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 항만 · 물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금융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의 확산,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는 지역 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북극항로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해상물류체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부산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해양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 이에 따라 항만 인프라, 해운·조선, 친환경 선박, 스마트항만, 해양에너지, 국제물류 등 북극항로와 연계된 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동남권 산업과 전략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동남권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안정적인 정책금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북극항로 및 해양산업, 산업구조 전환, 지역혁신산업, 교육·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남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동남권발전펀드를 조성하여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기반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정책금융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동남부 경제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남권 전략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기본원

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총회, 이사회, 동남권발전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정책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배구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다.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북극항로와 연계된 해양·항만·물류 산업, 지역기업,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지원 등을 공사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대출·투자·출자·보증·사채 인수·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라. 공사가 동남권 산업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동남권발전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공사가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한국은행·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예산 및 결산, 손익금 처리, 손실금 보전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보고·검사, 임원의 해임, 다른 법률에 따른 출자 특례 등을 규정하여 공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사. 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공사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설립비용 부담 및 산업은행 출자 특례 등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제43조 및 부칙).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산업생태계의 혁신,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한 해양·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동남권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동남부 경제권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공사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공사는 민간금융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④ 공사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정책금융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⑤ 공사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남부경제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사가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극항로, 친환경선박, 스마트항만, 해양물류, 첨단제조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는 동남권 산업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기업유치 정책과 동남권투자공사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항만·배후산업·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남권”이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북극항로 관련 산업”이란 북극항로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되는 항만, 해운, 조선, 선박금융, 물류, 에너지, 디지털물류, 친환경선박 및 이에 준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지역혁신산업”이란 지역특화산업, 첨단제조업,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에너지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6조(법인)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공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③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운영한다.

제7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 ② 공사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 ③ 공사는 필요하면 국내외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공사는 북극항로 및 국제금융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점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동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 ① 공사는 5년마다 동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남권 산업발전 전략
2. 북극항로 대응 전략
3. 해양금융 발전전략
4. 전략산업 투자계획
5. 지역균형발전 지원계획
6. 탄소중립 및 산업전환 지원
7. 혁신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8. 지역혁신대학 및 연구중심병원 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동남권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공사의 설립 및 지배구조

제10조(설립) ①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한다.

② 정부는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다.

③ 자본금의 증액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출자한다.

1. 대한민국 정부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

② 정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④ 정부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제13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정부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다.

③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동남권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주주총회) ① 공사는 주주총회를 둔다.

②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자본금 증감
3. 재무제표 승인
4.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해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동남권발전협회의의 설치) ① 동남권 산업발전과 국가 전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사에 동남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공사의 정책 심의·자문 기구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북극항로 전략
2. 해양수도 부산 추진전략
3. 국가 산업전략과의 연계
4. 동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
5. 동남권발전펀드 운용방향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동남권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차관
2. 기획예산처 차관
3.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해양수산부 차관

6. 부산광역시 부시장 중 1인
7. 울산광역시 부시장 중 1인
8. 경상남도 부지사 중 1인
9. 공사의 사장
10. 위원장이 위촉하는 산업계 전문가 1인
11. 위원장이 위촉하는 금융전문가 1인
12.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양전문가 1인
13. 위원장이 위촉하는 지역혁신 전문가 1인
1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 ①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사장 1인
2. 부사장 2인
3. 상임이사 5인 이내
4. 비상임이사 6인 이내
5. 감사 1인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기관 임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산업정책 또는 해양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③ 부사장과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 ④ 비상임이사는 해양·조선·항만·지역혁신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 ⑤ 감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부사장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1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사의 경영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채 발행 및 펀드 조성에 관한 사항
4. 조직 변동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①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①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재산등록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업무

제26조(업무의 기본원칙) ① 공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수행한다.

② 공사는 민간금융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③ 공사는 사업성뿐 아니라 공공성·국가전략성·지역발전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한다.

④ 공사는 정책금융을 공급함에 있어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구조 고도화
 2. 동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3.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된 조선업, 해양물류 산업,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지원
 4. 동남권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녹색성장 지원
 5. 동남권에 소재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의 지원
 6. 동남권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 재편 및 일자리 이동 지원
 7. 동남권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8. 동남권 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② 공사는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금의 대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의 투자
 3. 자산의 매수
 4. 자금의 차입
 5. 사채의 발행
 6.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7. 제1호 및 제6호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8. 사채의 인수
 9. 동남권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
 10. 동남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11. 정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
하여 위탁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부대업무
 13.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 ③ 정부 및 동남권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사
업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제9호에 따른 펀드는 복수의 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업무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업무방법서) 공사는 제27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공사가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3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사채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회사에의 예치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33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3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제3호에 따른 준비금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36조(손실금의 보전)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준비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정책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8조(보고·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한다.

1.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제40조(다른 법률에 따른 출자 등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4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가 또는 동남권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남권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한 자

②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임명·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는 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출자 제한의 특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는 공사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